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적용... 공정위 “신속 심의”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심의과정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 약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가 적용돼 보다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1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심리 방식은 위원과 심사관,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구술심리와 당사자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해 행해지는 서면 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엔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는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된다. 이처럼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돼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 의사가 있으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약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10% 감정 적용해 결정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잠정 결정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정식절차에서 다룰 기회를 보장하지만,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는 소회의 심의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현재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전원회의 처럼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기간을 늘려 사업자와 참고인 등 공정위 심판정 출석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69억 부과
조사 비협조적이던 2개사 검찰 고발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담합하고 장기간 폭리를 취해 온 4개사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미트리 4곳

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잠정)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87억5200만원)와 다날(53억8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중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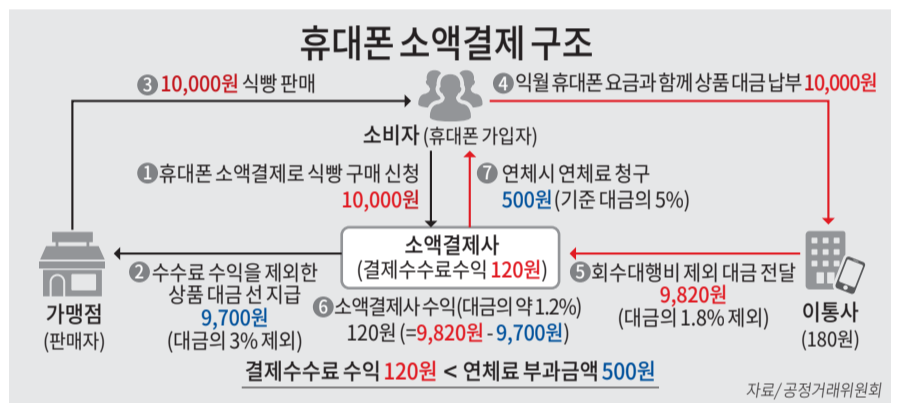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휴대폰만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3억934만건 중 약 30%에 달하는 9280만건이 연체·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결제사는 판매점인 가맹점과 소

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얻는다.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 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미리 상품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소액 결제사는 9년간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담합에서는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미트리 3개사가 2010년 1월~10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소액 결제사들은 2012년 1월~9월 사이 연체료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

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연체료율을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 “해결 노력”

“심의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관련 국민청원에 문화재청이 17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적절한 행정조치 ▲사업자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 및 관련 소송 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1만6045명의 국민이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청원과 국민청원에 참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공개한 해당 청원 답변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는 총 세 개 단지(1373세대) 아파트를 두고 “문화재보

호법’ 제35조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보고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 자문기관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 현상변경 심의 절차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

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사업자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의한 공사 중지 처분 및 형사고발’ 이후 관련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전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머크·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사전 검토”

질병청, 긴급사용승인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2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머크의 ‘라브라게리오’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 2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한국화이자는 지난 10일 팍스로비드의 품질,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라게브리오는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리보핵산 대신 삽입되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한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라게브리오’

수적인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저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하고,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e@